



행복한 변화, 새로운 경남

2016. 8.

- 예산군의 (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목 차

I . 감사 개요	1
II . 보조금지원 현황	2
III . 감사 총평	3
IV . 감사 결과	3
1. 청구내용 확인사항	
2. 기관별 지적사항	
V . 제도개선 사항	11
VI .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12
[처분요구서]	

- 예산군의 (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청구 개요

- 청구일 : 2016. 3. 16. ※ 감사기간 : 5. 25. ~ 8. 31. (당초 7. 24.까지)
- 청구인 : 예산군 ☆☆면 ◎◎◎ 등 156명
- 청구사유 : 예산군에서 (주)○○○○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 중 유류, 인건비 및 기타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감사요구

〈주민감사청구 주요 내용〉

- ○○○○의 유류 사용량과 구입량
- ○○○○의 인건비 등 지급내역
 - 현금지급내역,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액
 - 상조은행의 대부 영업내역, 노동조합 지원금
- ○○○○의 자동차 대·폐차보조금 및 차량구입비 보조금 정산내역
- ○○○○의 차입금의 차입내역과 사용내역, 이자 지급 및 상환내역
- ○○○○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지급된 거마비(교통비), 유류대, 체력단련비
- 기타 예산군이 ○○○○에 지급한 보조금의 지원내역과 정산내역 등

2. 감사 실시

- 기간 : 2016. 6. 27.(월) ~ 7. 5.(화) / 7일간
- 감사대상 : 예산군
- 감사반 : 조사 1팀장 등 8명(외부전문가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3~2015년 예산군이 ○○○○에 지급한 보조금 업무 전반

II. 보조금 지원현황

1. 보조금 지원 업체

- 대 상 : (주)○○○○○
- 대표자 : ☆☆☆, ★★ (설립일 : 19**. 12. 19.)
- 주 소 : 충남 예산군 △△읍 △△로 ☼☼☼
- 직원수 : **명(상임대표 1, 운전원 **, 사무 및 정비 9)
- 차 량 : **대(운행차량 **, 예비차량 2)
- 노 선 : 144개(13,910km)

2. 3년간 보조금 지원 현황

연번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비고
	계	3,052,701	3,321,851	3,644,315	
1	재정지원금	507,930	610,376	481,300	
2	비수익노선지원금	907,000	1,013,000	1,223,000	
3	단일요금제지원금	400,000	400,000	400,000	
4	☼☼신도시연장버스구입	88,649			
5	특별재정지원금	321,845	509,110	533,500	
6	벽지노선지원금	19,404	21,058	20,664	
7	대폐차비지원금	120,000	180,000	252,000	
8	공영버스구입 지원금	59,454			
9	임금인상경영개선보상금	120,000			
10	유가지원금	503,819	543,527	548,348	
11	디지털운행기록계	4,600			
12	환승단말기 설치		41,360		
13	환승제 손실보상금		3,420	100,503	
14	행선지 LED 사업비			85,000	

Ⅲ. 감사 총평

- 예산군은 관내 운수업체의 농어촌버스 운영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존 명목으로 최근 3년간 1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지원
- 군은 재정여건 상 손실액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지원하고 있으며, (주)○○○○(이하 ○○○○)은 지원금에 대해 버스구입비 등 사용 목적이 정해진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건비 및 유류비로 집행
- ○○○○의 지출 내역 중 자체 수익금과 보조금으로 지출한 내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요청한 사항의 전체를 확인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 예산군은 ○○○○이 비수익노선 등 농어촌버스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재정 현황 분석 및 원가 산정 검토 등의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 ○○○○에서는 보조금과 관련 있는 재무재표 및 회계처리상 감가상각비 과다 계상, 보험료 부당 비용처리 등의 회계관리 부적정 사항과 유류관리 대장을 실 사용량과 다르게 관리하는 등의 사례 확인

Ⅳ. 감사 결과

1. 청구내용 확인사항

- ① ○○○○의 유류 구입량과 사용량 관련
 - 유류잔량을 임의로 줄여 관리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예산군에서 검토 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등을 조치토록 할 예정
 - ② 인건비 현금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 상조은행, 노동조합 지원 관련 사항
- 가. 인건비 현금 지급관련
- 2013~2015년 기간 중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총 5,012,952천원 중 139,949천원을 소속 일부 직원들(3년간 누계 80명)에게 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

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지급관련

- 계약직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 1년 이상의 계속 근무자(정규직)에 한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는 근속수당 (연당 15천원) 이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상조은행의 대부영업 관련

- 감사 대상 아님

라. 노동조합 지원금 관련

- 감사 대상 아님

- ③ ○○○○의 자동차 대폐차보조금 및 차량구입비 보조금 관련 사항
- 2014년 대폐차보조금의 경우 교부조건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 등에 대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며,
 - 교부결정 후 예산이 변동되어 변경교부 결정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지 없이 변경한 금액으로 보조사업 진행 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됨
- ④ ○○○○의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차입내역과 사용내역, 이자 지급내역, 상환내역 확인 요청
- 2013~2014년 (주)❖❖❖❖와 임원 등 5명에게 연 이자율 13.241%의 비교적 높은 금리로 차입금을 조달한 바 있으나, 당시 ○○○○은 신용등급 7B 수준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2015. 7월 기준으로 모든 차입금을 상환한 상태로 확인됨
- ⑤ ○○○○의 임원 및 관리자에게 과다 지급된 거마비(교통비), 유류대, 체력단련비에 대한 확인 요청
- 비상근 임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사회 등을 거쳐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음. (2016년부터는 지급하지 않음)
- ⑥ 위 사항 이외에 예산군이 ○○○○에 지급한 보조금의 지원내역과 정산내역
-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등 부적정 사항이 일부 확인됨

2. 지적사항(예산군 · ○○○○)

1) 예산군의 보조금 지원 관련

①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예산군에서는 2013~2014년 기간 중 ○○○○ 소유의 한 개 계정에 다수의 보조사업 보조금(2013년 11개 사업 /3,052백만원, 2014년 9개사업/3,321백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은 해당 보조금 전부를 자체 운영비 계정 등으로 이체한 후 자체 수입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보조금을 단위사업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총액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위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② 시내버스 대폐차지원금 보조금 교부 관리 소홀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부담 금액과 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교부조건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 등에 대한 조건을 별도 붙이지 않고 교부 결정 하였으며,

※ 2014년도 교통분야 예산계획(2013.10. 군수 방침)에 중형버스 대폐차 보조 지원액을 차량 1대당 90,000천원 중 군비40%(36,000천원), 자담60%로 산정

⇒ 또한, 교부결정 후 2014.9.4. 추경예산 변동으로 대폐차보조금이 180백만원으로 조정되어, 변경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지 없이 180백원으로 보조사업을 진행 후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음

③ 인건비 현금 지급 관련 보조금 집행기준 관리·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고,
 - 또한, 201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 추진시 대금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토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예산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 ⇒ ○○○○에서는 2013~2015년 기간 중 139백만원을 일부 소속 직원들(3년간 누계 80명)로부터 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④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예산군은 2014년도에 ○○○○에 교부한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013백만원 중 13백만원을 2014. 12. 24일에 송금함으로써
- ⇒ ○○○○이 이 금액을 연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2015. 1월 2회에 걸쳐 자체 수익금 및 타 사업 보조금(특별재정지원 보조금)에 더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상황을 제공하였고, 정산시 각각 총 지급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를 인정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의 보조금 집행 관련

① 보조금으로 구입한 유류 관리 부적정

- ○○○○은 유류를 구매하고 관리함에 있어 유류잔량을 고의적으로 줄여 유류를 필요 이상 구매한 사실이 있으며
- ○○○○의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한 경유 구매량(구매액)은 2013년

1,401천리터(2,225백만원) 2014년 1,522천리터(2,298백만원), 2015년 1,684천리터(1,952백만원)이며

- 유류구매액 중 보조금의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약 72.1%임

○ RFID(전자태그)를 통해 확인한 ○○○○의 경유 사용량은 2013년 1,368천리터, 2014년 1,401천리터, 2015년 1,446천리터로서 매년말 누적 잔량이 2013년 102천리터, 2014년 223천리터, 2015년 461천리터가 남아있어야 함에도

- ○○○○에서 관리하는 경유 원장에는 2013년 34천리터, 2014년 33천리터, 2015년 271천리터만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됨

※ 2012년도 유류이월량 67,694리터 포함

○ 따라서, ○○○○은 경유 구매 후 사용량을 뺀 잔량을 경유 원장에 기재하면서

- 2013년도에는 68천리터, 2014년도에는 121천리터를 의도적으로 적게 기재하여 총189천리터의 경유를 내역없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② 영업손실 과대 계상

1)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 ○○○○은 차량(버스)에 대해 내용년수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회사의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률법 5년 상각률인 0.451보다 높은 0.551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 29,536,212원, 2014년 215,436,562원, 2015년 278,454,554원 합계 523,427,328원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2) 보험료 부담지급

○ ○○○○은 2014.12.12. 저축성보험료('14.12.12~'17.12.12) 명목으로 수수손해보험의 무배당 수수 ●●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200백만원을 현금으로 일시불 납입하고 이를 유지보험료로 계상하였음

- 그러나, 만기에 전액 환급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 ‘유지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계산하여 이용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 해당 보험증권 확인 결과, 계약자는 ○○○○, 피보험자는 비상임대표 이사인 ★★ ★으로 확인되며, 보상 내역은 피보험자의 상해후유장애 및 구내강도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확인됨

3) 계약만 체결한 구매건을 비용으로 처리

- 2015. 12. 31일에 회계처리한 소모품비(내역 : 삼바리의 부품)는 2015. 12. 31일 현재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물건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 그럼에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용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약건을 비용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15백만원의 비용을 과대 계상함
- ※ 2016. 6. 30일 현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물건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음

4) 퇴직금 지급 소송청구액을 비용으로 부당 계상

- 기업회계기준은 소송과 같은 우발부채의 경우 현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럼에도, ○○○○은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청구액을 소송의 승패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않고
- ‘운전직-퇴직급여(비용)’ 및 ‘미지급-퇴직금(부채)’의 계정과목으로 2013. 12. 31일 453,004,177원, 2015. 12. 31일 173,274,227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비용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5) 보험료 선급비용(자산)을 비용으로 대체

- 2013년말 현재 선급비용 해당액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서,
- 2012년말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선급비용 112,365,177원을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여 2013년에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6) 사옥 리모델링 건을 자산이 아닌 비용(수선비)으로 처리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투입된 지출건 (2013년 106,126천원, 2014년 158,918천원)은 자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이 아닌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음

- 7) 버스측면 전광판을 자산이 아닌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
- 2013년에 버스측면 전광판 등 자산을 버스에 설치하면서 이에 소요된 199,562,000원을 차량 등 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음

③ 비상근임원(이사) 차량유류 보조비 등 지급 부적정

- 매년 경영손실액이 발생하여 예산군수로부터 재정지원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근 대표이사 외에 비상근 이사에게까지 차량유지비와 체력단련비를 지급한 사실 확인
 - ○○○○ 손익계산서상 영업 손실액을 볼 때 2013년도 3,088백만원, 2014년도 2,790백만원, 2015년도 2,848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비상근 이사에게까지 2013년부터 3년간 차량유류보조비, 체력단련비 등 총33.7백만원을 지급
- ⇒ 이는 ○○○○의 영업 손실을 가중시키는 일부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반면 예산군수는 보조금액을 그만큼 더 지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

V. 제도개선 사항

<문제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으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예산군이 ○○○○에 지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교통보조금은
 - 2012년 발주한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 시행에 따른 수지분석 및 환승제 검토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손실액을 근거로 산출
 - 그러나 군의 재정형편상 손실액 전액을 보전해주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군수의 방침으로 보조금액을 결정
- ○○○○은 외부감사대상¹⁾이 아닌 관계로 회계법인 등으로 부서의 별도 확인 없이 법인세 신고서류(재무제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를 작성·신고하였으며 예산군은 ○○○○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다음연도 보조금 산정기준으로 활용
 -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회계 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영업손실 과대 계상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고,
 - 또한 공용버스구입비 및 대폐차보조금 등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명확한 일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출항목에 제한이 없는 재정지원의 형태로 지원하므로
 - 정산시에도 자체수익금까지 포함된 전체 지급내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측정이 불가

<개선사항>

- 보조금 산정시 외부(회계법인)감사를 통해 재무제표 등을 작성·제출토록하여 보조사업자의 재무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사용 항목을 명시 및 자체 수익금과 중복 지출여부를 확인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이 사용된 항목의 전체 리스트를 함께 제출받아 정산

1) 2016년도 기준 외부감사 대상은 ①직전사업년도(2015) 말 자산총액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②직전사업년도(2015) 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③직전사업년도(2015) 말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④상장회사이거나 2016, 2017년도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회사

VI. 감사결과 조치계획

○ 조치 계획

〈행정상〉

(단위 : 건)

계	시 정	주 의	권 고	현지처분	비고
5	1	1	-	3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 징 계	경 징 계	훈계·경고	비고
5	-	-	5	

〈재정상〉

(단위 : 원)

계	추 징	회 수	감 액	기 타(환부등)
-	-	-	-	

○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대상 목록

연번	제 목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조 치 의 건	금 액		
계	5 건	시정 1 주의 1 현지처분3	-	-	훈계 5	
1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주의 1			훈계 5	
2	농어촌버스 유류 관리 및 영업손실 계상 부적정	시정 1				
3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현지처분1				
4	인건비 현금지급 관련 보조금 집행기준 관리·감독 소홀	현지처분1				
5	보조금 송금 지연 및 이월 사용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현지처분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관리·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예산군(□□□□과)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2년간(2013~2014)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보 조 금	
		2013년	2014년
계		3,052,701	3,321,851
1	재 정 지 원 금	507,930	610,376
2	벽지노선지원금	19,404	21,058
3	대폐차비지원금	120,000	180,000
4	공영버스구입비	59,454	0
5	비수익노선손실보상	907,000	1,013,000
6	☉☉신도시연장운행손실보상금	0	0
7	☉☉도시연장버스구입	88,649	0
8	특별재정지원금	321,845	509,110
9	단일요금손실금	400,000	400,000
10	임금인상경영개선보상금	120,000	0
11	디지털운행기록계	4,600	0
12	행선지 LED사업	0	0
13	환승단말기 설치	0	41,360
14	환승제 손실보상금	0	3,420
15	유 가 보 조 금	503,819	543,527

② 2년간(2013~2014) 보조금 정산내역

<2013년도분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집 행 내 역				
	계	인건비	유류비	4대보험	차량구입등 기 타
계	3,052,701,000	1,695,972,439	1,117,435,079	122,469,402	116,824,080
비수익노선	907,000,000	558,831,640	260,335,000	49,854,280	37,979,080
재정지원금	507,930,000	449,513,000	47,500,000		10,917,000
단일요금제	400,000,000	164,051,799	178,064,079	25,961,122	31,923,000
유류세연동	503,819,000		503,819,000		
벽지노선	19,404,000	5,404,000	14,000,000		
버스대폐차	120,000,000	107,683,000	12,317,000		
공영버스구입	59,454,000	10,000,000	28,000,000	5,454,000	16,000,000
☉☉신도시 연장버스구입	88,649,000	72,283,000			16,366,000
특별재정지원	321,845,000	235,845,000	73,400,000	12,600,000	
임금인상경영 개선보상금	120,000,000	92,361,000		24,000,000	3,639,000
디지털 운행기록계	4,600,000			4,600,000	

<2014년도분 보조금 정산결과>

(단위 : 원)

구 분	집 행 내 역				
	계	인건비	유류비	4대보험 등	차량구입등 기 타
계	3,321,851,000	1,405,293,230	1,336,178,940	260,793,030	319,585,800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610,376,000	323,048,950	148,320,000	61,781,250	77,225,800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013,000,000	666,251,570	310,386,170	36,362,260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400,000,000	200,151,130	148,248,870	30,600,000	21,000,000
특별재정지원	509,110,000	211,621,580	165,438,900	132,049,520	
벽지노선 손실보상	21,058,000	800,000	20,258,000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180,000,000				180,000,000
무료환승제 단말기 설치	41,360,000				41,360,000
무료환승제 손실보상	3,420,000	3,420,000			
유가보조금	543,527,000		543,527,000		

나. 위법·부당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소속 공무원이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는 등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도, 예산군에서는 2013~2014년 기간중 단위사업별 별도 계정이 아닌 (주)○○○○(이하 ○○○○) 소유의 1개 계정(농협 ***-****-****-**)에 다수의 보조사업 보조금(2013년 11개사업/3,052백만원, 2014년 9개사업/ 3,321백만원)을 교부(입금) 하였으며,
 - 이와 관련 보조사업자인 ○○○○에서 상기 계정으로 입금된 보조금을 수시로 인출하여 자체 운영비 계정 등으로 이체한 후 자체 수입금과 혼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 한 사실이 있고,
 - 2013년도분 및 2014년도분 보조금을 단위사업별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당해연도 보조금 지원 총액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위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예산군수(☐☐☐☐과장)께서는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 사업연도 종료 후에는 단위사업별로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어촌버스 유류 관리 및 영업손실 계상 부적정

【기 관 명】 예산군(○○○○과)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가. 현 황

① 유류 관리 관련

○ (주)○○○○ 농어촌버스 유류 구매 내역 및 사용 현황

연도	유류 구매 금액(천원)			유류 사용량(천리터)			비고
	총구매액	보조액	보조비율	구매량	사용량	잔량	
합계	6,507,316	3,654,332	56.16%	4,608	4,215	393	
2013	2,256,331	850,298	37.68%	1,402	1,368	34	
2014	2,298,516	1,320,454	57.45%	1,522	1,401	121	
2015	1,952,469	1,483,580	75.98%	1,684	1,446	238	

※ 유류 사용량은 FSMS(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자료임

○ (주)○○○○ 농어촌버스 유류 누적 잔량

(12.31일 기준 / 단위 : 천리터)

연도	경유 구매량	경유 사용량 (FSMS)	경유 잔량				비고
			계산상 누적잔량 (A)	○○○○		잔량 차이 (B)-(A)	
				장부상(B)	재무재표상		
2012			68	68	68		’12년 이월량
2013	1,402	1,368	102	34	34	△68	
2014	1,522	1,401	223	33	33	△190	※ 실제차이 189
2015	1,684	1,446	461	271	230	△190	

※ ○○○○은 유류장부를 수기로 관리하여 FSMS상 유류사용량과 3년간 약 1천리터의 차이가 발생. 따라서 실제 잔량차이는 189천리터로 확인됨

② 영업손실 과다계상 관련

① 2013~2015년 (주)○○○○의 영업손익 현황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I. 매출액	4,084,665,340	4,320,804,490	4,034,096,900
II. 매출원가	-	-	-
III. 매출총이익	4,084,665,340	4,320,804,490	4,034,096,900
IV. 판매비와관리비	7,172,694,554	7,111,273,331	6,883,014,076
V. 영업손실	3,088,029,214	2,790,468,841	2,848,917,176

②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당 또는 과다한 비용 계상 현황

연도	계정과목	해당금액	내용	비고
2013년	퇴직급여	453,004,177	퇴직금 소송 청구액을 비용으로 처리	
	보험료	112,365,177	보험료 선급비용(자산)을 비용	
	수선비	106,126,160	건축물을 수선비로 처리	
	소모품비	199,562,000	차량을 소모품비로 처리	
	감가상각비	29,536,212	상각률 0.551 적용	
	소계	900,593,726		
2014년	보험료	200,000,000	저축성보험료 비용 계상	
	수선비	158,918,424	건축물을 수선비로 처리	
	감가상각비	215,436,562	상각률 0.551 적용	
	소계	574,354,986		
2015년	퇴직급여	173,274,227	퇴직금 소송 청구액을 비용으로 처리	
	감가상각비	278,454,554	상각률 0.551 적용	
	소모품비	15,000,000	비용지급 후 '16. 6. 30.현재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물건 입고 안됨	
	소계	466,728,781		
합계		1,941,677,493		

③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정 후 영업손실

과 목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영업손실	3,088,029,214	2,790,468,841	2,848,917,176	8,727,415,231
수정금액	900,593,726	574,354,986	466,728,781	1,941,677,493
수정후 영업손실	2,187,435,488	2,216,113,855	2,382,188,395	6,785,737,738

나. 위법·부당사항

① 유류 관리 관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농어촌버스의 운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도비 및 군비(교부세 포함)로 재정지원하고 있다.
- 또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하고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 재정지원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중 유류구입 항목은 농어촌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만을 구입하여야 하고, 버스에 주입한 경유량은 유가보조금관리 시스템(FSMS : Fuel Subsidy Management System)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객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유류량은 실제 사용량과 원활한 버스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예산군수는 보조금으로 지급된 유류 구매량과 지출 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주)○○○○(이하 ○○○○)은 운송사업자 차고지 내 유류 9만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자가주유 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에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의 주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량에 유류 주입시 실 주유량을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다. ○○○○에서 관리하는 경유원장에는 경유의 구입일자와 구매금액(일부 리터당 단가 포함), 사용일자 및 차량대수와 사용량, 그리고 잔량을 등을 기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① ○○○○ 유류관리 장부와 실 사용량 불일치

○ ○○○○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류원장에 기재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경유 구매량과 사용량(FSMS 시스템 기준)을 비교한 결과 2012년에 이월된 경유 약 6만 8천 리터를 포함하여 2015. 12. 31일자 잔량을 계산할 경우 약 46만 1천 리터의 경유가 남가 있어야 하나, 원장에는 약 27만 1천 리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도별 누적잔량을 계산한 결과 2013년도에 6만 8천 리터(110,976천 원 추정), 2014년도에 12만 1천 리터(183,799천 원 추정) 등 총 18만 9천 리터(294,775천 원 추정)의 경유가 사용내역이 없이 월별 누계 사용량을 고의로 조작하여 기재하였다.

※ ○○○○ 유류 평균구매 단가(리터당) : 2013년 1,632원 / 2014년 : 1,519원 / 2015년 1,189원

- 2013년, 2014년 ○○○○의 법인세 신고서류 중 재무재표에 기재된 저장품 항목의 유류 잔량이 ○○○○ 유류원장의 잔량과 유사하므로, ○○○○이 18만 9천 리터의 경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담당직원(●●●)이 장부상 유류잔량은 기존부터 누적되어 온 허수의 잔량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잔량과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잔량을 줄여 기재하였음을 확인함

② 예산군의 유류구매 정산 확인 소홀

○ ○○○○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경유 구매량과 사용량(FSMS 시스템 기준 사용량 산출)을 비교한 결과 총 구매량은 460만 8천 리터이고 사용량은 421만 5천 리터로 2012년에 이월된 6만 8천 리터를 더하면 2015.12.31.일 기준으로 총 46만 1천 리터의 잔량이 발생하였다. 이는 ○○○○ 자가 주유 시설 저장량의 약 5.1배에 달하는 양으로, ○○○○의 1개월 경유소비량을 11만 7천 리터(3년간 월평균 경유 사용량)라고 할 때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 ○○○○이 2015. 12. 4. 예산군으로부터 교부된 “특별재정지원 보조금”으로 보조금의 회계연도 내 집행을 위하여 2015. 12. 31.에 19만 2천 리터를 일괄 구입(구입대금은 2016. 1. 7. 지급)하여 비축한 양을 제외하더라도, 약 26만 9천

리터를 필요이상 구매하였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억 8천 9백만원 정도이다.

- ○○○○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약 18만 9천 리터의 유류를 별도의 사용사실 없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 예산군 도로교통과에서는 ○○○○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농어촌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보다 약 26만 9천 리터가 많은 양을 구매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류구입비의 약 56.1%를 지원한 예산군은 보조금이 사용된 유류 구매와 사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정산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은 이러한 절차 등을 악용하여 보조금을 부 적정하게 관리한 정황이 있다.

② 영업손실 과다계상 관련

- 결산을 할 때에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영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에 반영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41백만원 정도를 아래와 같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르게 부당 또는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하여 그만큼 영업손실을 과대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다.

①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 ○○○○은 차량(버스)에 대해 내용연수 5년,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다.
- 그런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간 ○○○○의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은 정률법 5년 상각률인 0.451보다 높은 0.551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년 29,536,212원, 2014년 215,436,562원, 2015년 278,454,554원 합계 523,427,328원의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② 저축성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

- ○○○○은 2014년 12월 12일 보험기간을 14.12.12~17.12.12으로 하는 ♡♡

손해보험의 ‘무배당 수수 ●●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200백만원을 현금으로 일시 납입(이 때 납입한 200백만원은 만기일에 전액 환급됨)하고, 이를 비용계정과목인 ‘유지보험료’로 계상하였다.

-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은 만기에 전액 환급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도 ‘유지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2014년에 200백만원의 비용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 위 보험의 계약자는 ○○○○, 피보험자는 회사의 비상임대표이사인 ★★,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상해후유장애 및 구내강도손해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확인됨

③ 계약만 체결한 구매 건을 비용으로 처리

- 2015년 12월 31일에 회계처리한 소모품비(내역: 삼바리리외부품)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계약만 체결한 상태로 물건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비용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은 거래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기 계약건을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2015년에 15백만원의 비용을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 ※ 상기 계약건은 2016년 6월 30일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 발행 및 물건 입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④ 퇴직금 지급 소송 청구액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

- ○○○○은 퇴사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청구액을 ‘운전직-퇴직급여(비용)’ 및 ‘미지급-퇴직금(부채)’의 계정과목으로 2013년 12월 31일 453,004,177원, 2015년 12월 31일 173,274,227원을 비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은 소송과 같은 우발부채의 경우 현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소송의 승패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소송청구액 전액을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함으로써 2013년 453,004,177원, 2015년 173,274,227원의 비용을 각각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

⑤ 보험료 선급비용(자산)을 비용으로 처리

- 2013년말 현재 선급비용 해당액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면서 2012년말 현재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던 선급비용 112,365,177원을 보험료로 비용 처리(12/31)하여 결과적으로 2012년말 현재 선급비용 잔액 112,365천원을 2013년에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⑥ 사옥 리모델링 지출건을 자산이 아닌 비용(수선비)으로 처리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옥을 리모델링하면서 투입된 지출건(2013년 106,126천원, 2014년 158,918천원)은 자산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건물, 구축물 등 자산이 아닌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다.

⑦ 버스측면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이를 자산이 아닌 비용(소모품비)으로 처리

- 2013년에 버스측면 전광판 등 자산을 버스에 설치하면서 이에 소요된 199,562,000원을 차량 등 자산이 아닌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예산군수(□□□□과장)께서는

- ○○○○이 2013년도 6만 8천 리터, 2014년도 12만 1천 리터 등 총 18만 9천 리터(294,775천 원 추정)의 경유를 실제 사용 사실 없이 사용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사실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941백만원 정도를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규정과 다르게 감가상각비 과다계상 등 부당 또는 과다하게 비용을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
 -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환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향후 보조금 정산 시 지출 금액에 대한 정산뿐 아니라 지출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요 구 서

예산군(☐☐☐☐과)이 (주)○○○○에 지급한 보조금 집행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 바랍니다.

2016. .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 ☺ ☺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천원)	
예산군(☐☐☐☐과)	2014~2015	주 의			

[제 목]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가. 현 황

- 사 업 명 : 중형버스 대폐차비 보조금 지원
- 대 상 자 : (주)○○○○ 대표 ☆☆☆

<보조결정 통보>

- 통 보 일 : 2014.3.31.
- 보조결정 : 금288,000,000원(군비 288,000,000원), 8대
- 지원조건 : 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준수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 정 산 일 : 2015.5.15.
- 정산금액 : 금180,000,000원(군비 180,000,000원), 6대
- 정산결과 : 차량구입 보조금 180백만원 이상없이 전액 집행 등

<세부 집행 내역>

- 2014.2.25.부터 2014.12.15.까지 대폐차보조금 180백만원을 차량 인도금, 취득세, 할부금 등으로 전액 소진 2014년도 자부담 집행 내역 없음
- 나머지 잔액(자부담)은 3년에 걸쳐 할부로 매월 상환 중

나. 위법·부당사항

-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3.9.30. 시행) 제5조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자기자본 부담액 등을 기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 검토하여 조사 결정”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으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급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다.
- 예산군 □□□□과에서는 2014.3.31.경 「2014년도 중형버스 대폐차비」 보조금 288백만원을 (주)○○○○에 보조결정 통보하면서
 - 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부담하는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 교부조건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 등에 대한 조건을 별도로 붙이지 않고 교부 결정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교부결정 후 2014.9.4. 추경예산 변동으로 대폐차 보조금이 180백만원으로 조정되어, 변경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별도 통지 없이 180백원으로 보조사업을 진행 후 정산토록 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요구 내용

- 예산군수(□□□□과장)께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관련규정을 충분히 연찬토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 및 교부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요 구 서

예산군(☐☐☐☐과)이 (주○○○○)에 지급한 보조금 집행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 바랍니다.

2016. . .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천원)	
예산군(☐☐☐☐과)	2013~2015	주 의			

[제 목] 인건비 현금지급 관련 보조금 집행기준 관리·감독 소홀

가. 현 황				
○ 3년간(2013~2015) 인건비 총 지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 건 비			비 고
	계	보조금	자체수입금	
계	7,342,152	5,012,952	2,329,200	
2013년	2,263,525	1,695,972	567,553	
2014년	2,427,111	1,405,293	1,021,818	
2015년	2,651,516	1,911,687	739,829	
○ 3년간(2013~2015) 보조금 중 인건비 현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명)				
구 분	보조금 중 인건비 현금지급 내역			연누계 인원수
	계	운전직	관리직	
계	139,949	16,790	123,159	80
2013년	11,959	6,584	5,375	8
2014년	43,838	4,760	39,078	25
2015년	84,152	5,446	78,706	47

나.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있다.
- 또한, 「2015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사업 추진시 대금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토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산군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주)○○○○에서 2013~2015년 기간중 보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총 5,012,952천원 중 139,949천원을 소속 일부 직원들(3년간 누계 80명)에게 영수증만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기준을 위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예산군에서는 매년 보조금 정산검사 시 인건비 현금지급 건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강구하지 않는 등 보조금 집행기준 관리·감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요구 내용

예산군수(□□□□과장)께서는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 인건비 등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를 명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지 처 분 요 구 서

예산군(☐☐☐☐과)이 (주)○○○○에 지급한 보조금 집행관련 주민감사청구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처분하니 즉시 조치(앞으로 주의) 바랍니다.

2016. . .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 ☺ ☺ (인)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비 고
			조치방법	금 액(천원)	
예산군(☐☐☐☐과)	2014	주 의			

[제 목] 보조금 송금 지연 및 이월 사용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가. 현 황

○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2015년 집행 내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지출일자	지출항목	금액(원)	비고
합계					13,000,000	2014년 보조금을 2015년에 지출 하였으나 적합한 것으로 정산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주)○○○○	2014.01.01.~ 2014.12.31.	2015-1-20	유류비-경유대	9,615,599	
			2015-1-26	유류비-경유대	3,384,401	

○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및 특별재정 지원금 송금 내역

사업명	송금일자	송금내역(천원)	비고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합 계	1,013,000	
	2014-01-16	300,000	
	2014-02-19	100,000	
	2014-03-31	200,000	
	2014-08-18	200,000	
	2014-09-25	200,000	
	2014-12-24	13,000	
2014년 특별재정 지원금	합 계	509,110	
	2014-12-05	482,768	
	2014-12-24	26,342	

나. 위법·부당사항

-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보조사업 수행 상황 등의 점검), 제20조(실적보고), 제21조(정산검사)에 따라
 - 예산군은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 또한, 군수는 제출된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도 예산군 [] [] [] [] 과에서는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 중 13,000천원을 연도말인 12월 24일에 송금하여
 - 보조사업자 (주)○○○○이 2015년 1월 20일 집행잔액 9,615천원을 자체 수익금을 포함하여 ♣♣♣♣로부터 유류 2만리터를 구매하였으며,
 - 동일 명목으로 2015년 1월 26일 보조금 집행잔액 3,384천원을 2014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 지원금과 합하여 ♣♣♣♣로부터 유류 2만리터를 구매하는 등 2014년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조금을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제공하였고, 정산시에는 이를 적합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처분요구 내용

예산군수([] [] [] [] 과장)께서는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연도를 경과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의)하시기 바랍니다.